

[가맹점과 대리점 간 계약서]

사 업 장	사업자 등록 번호 *	691-81-01385	대리점코드(4자리)	
	사업자 등록 상호 *	(주)네오다임	대리점 대표전화	1600-1667
	대표자명 *	김지석	담당자명	
	사업장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34 트라팰리스 926호	담당자 연락처	1600-1667

사 업 장	사업자 등록 번호 *		법인등록번호 * (법인만 기재)			
	사업자 등록 상호 *		간판상호 * (전표 표기용)			
	대표자명 *		생년월일 *			
	연대보증인 성명		연대보증인 생년월일			
	사업장 주소 *					
	업태 *		종목 *		취급품목	

㉔ 제품/서비스 공급 내용[표3]				㉕ 제품/서비스 공급 조건[표4]			
[단위: 원, VAT포함]				[단위: 원, VAT포함]			
제품/서비스명	수량	금 액	비 고	구 분	내 용	비 고	
카드단말기/운영관리비	1	360,000원	월 사용료 5,500원/월	ASP 사용 여부	☐ 사용 ☒ 비사용		
				계약 총액	일금 360,000원		
				결제 방법	☐ 현금 ☐ 신용카드 ☒ CMS		
				의무사용기간	만 36개월		
				완납예정일	20 년 월 일		
				기 타	승계 받는 양수매장일 경우 기존 양도매장 약정기간 적용		
합 계	1	360,000원	36개월				

본인 반출내역 : 제품/서비스 공급 내용[표2]

① 전항의 물품(이하 ‘물품’)이라 한다)는 (주)에오다임의 소유 물품으로서 본인이 이를 아래 주주식 매장에 정히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함과 아울러 본인에게 다음 각 조항 중 하나의 사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귀사의 본인에 대한 본진 계약의 해지통지 등 별도의 통지나 본인 또는 본인을 대신하여 본진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의 별도 동의 없이 보관물품을 귀사가 임의로 회수함에 동의하여, 이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1. 본인이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조세 공과금의 체납처분 기타 이에 준하는 처분을 받거나 본인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 계약 종료, 회사정리, 파산, 회사의 청산 등의 신청이 있었던 때

2. 본인이 발행, 배서, 보증 또는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되거나 본인이 어음 교환소로부터 거래청지 처분을 받은 때

3. 본인이 귀사에 대한 상품대금 기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

4. 기타 본인이 귀사와 체결한 기본계약서 및 건 별 개별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때

③ 제1항의 물품회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물품이 창고 등에 보관 중인 경우 귀사가 본인으로부터의 별도 동의 없이 임의로 시간 장치를 걸어 물품을 회수함에 동의하고 그에 관하여 인,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물품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는 본 물품반출동의서를 제3자에 대한 반출지시에 갈음하여도 이의 없음을 확약합니다.

당사(본인)는 본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였고, 계약(약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시내/시외전화 통신망을 이용하여 카드결제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이용 통신사에 따라 별도의 추가 통신요금이 매 달 통신사에서 청구될 수 있음을 확인한 후 신용카드 결제 장비 임대/판매 계약을 신청합니다.

가맹점 대표자 : (서명/인)

신청서 작성 위임장

[계약자 인적 사항]

사업장	상호			
	주소			
대표자	성명	(인/서명)	담당자 연락처	

[수입인 인적 사항]

수입인	상호	(주)네오다임	사업자번호	691-81-01385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34 트라펠리스 926호		

[제출 신용카드사]

신용카드사	롯데 카드	삼성 카드	하나 카드	현대 카드	KB 국민 카드	NH 농협 카드	신한 카드	BC 카드	우리 카드
제출여부	○	○	○	○	○	○	○	○	○

- 당사(본인)은 위의 수입인에게 상기 사업장의 KIS정보통신 / NICE정보통신 가맹점 가입신청 및 신용카드 가맹점 신청이 필요한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과 각종 제 신고 (결제 계좌 변경, 거래 인감 변경, 해지 및 정지, 주소 변경 등)를 위한 신청서 작성을 위임합니다.
- 당사(본인)은 가맹점 가입 및 제 신고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 장비 임대/판매 이용 약관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위의 수입인에게 동의를 위임합니다.

이 계약은 ㈜네오다임 (이하 "갑" 또는 "회사" 이하 한다)이 제공하는 카드단말기, POS, 기타제품의 판매, 임대, 무상, 유지보수 및 서비스(이하 "서비스"로 약칭)를 가맹점 및 계약자 (이하 "을" 이라고 한다.)가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설명하고 준수사항 및 원활한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 (서비스 이용 계약 성립, 목적)

"을"이 앞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하고 "갑"이 승낙한 때 본 계약이 성립 한다. "을"이 신청서에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서비스 이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갑"은 "을"의 서비스 이용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본 계약은 카드단말기, POS, 기타 제품의 판매(할부), 임대, 유지보수 및 서비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여 상호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서비스 이용)

"을"은 "갑"이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갑"이 정한 "표2"의 단말기, POS, 기타제품 및 VAN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는 통신프로그램(보안 프로그램 포함)이 탑재된 별도 부가장비를 "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부가장비는 "갑"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 3 조 (계약 조건, 기간)

1. "갑"은 "을"로부터 "표2"의 단말기, POS, 기타 제품을 구매 및 임대 조건으로 계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을"은 "갑"과 "표3"에서 정한 구매(할부), 임대, 유지보수 및 ASP 이용 등의 계약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3. "표3"의 계약기간 동안 "을"은 "갑"과 구매(할부), 임대, 유지보수, ASP이용 계약 후 "갑"에서 공급받은 장비와 유사한 타사의 단말기, POS 및 기타 장비를 추가로 이용해서는 아니되며, 타사의 단말기를 교차 사용시 애플이아 프로그램 사용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4. "을"이 "표2"의 단말기 POS, 기타 장비를 "표3"의 판매, 할부, 임대 유지보수 계약 후 대금, 임대료, 유지보수료, ASP이용료 대금의 완납과 약정기간 만료 이전에 "갑"의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사유로 본다.
5. "갑"은 "을"과 "표3"에서 정한 판매대금, 할부 대금, 임대료, 유지보수료, ASP이용료를 자동이체(CMS) 등록된 계좌를 통해 자동 출금할 수 있다.
6. 카드사의 VAN서비스 관련 수수료의 조정이나, 국가기관의 관련 법률의 시행 등에 있을 경우에 "갑"은 본 계약에 있는 수수료 지급 등을 조정하거나 중단 할 수 있다.
7. 계약기간은 "표3"에 명시된 기간이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과 "을"은 서면으로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를 하여야 하며, 쌍방의 통보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자동연장 한다.

제 4 조 (기한이익의 상실)

1. "을"은 다음의 경우 대금(할부금), 임대료, 유지보수료, ASP이용료의 납부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갑"은 잔여대금, 임대료, 유지보수료, ASP이용료 등을 일괄 청구할 수 있다.
2. "을"이 단말기, POS, 기타장비의 할부대금 및 임대료, 유지보수료, ASP이용료 등의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요금을 3회 이상 연체한 때
3. "을"이 본 약관 내용을 위반하거나 카드사, POS, 기타 업자 또는 공공기관으로 부터 불량거래자로 통지 받은 때
4. "을"이 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을 정지한 때
5. "을"이 임대약정으로 계약한 약정건수의 15%이하로 발생할 때
6. "을"이 계약기간만료 전에 사용을 중지, 사업장 폐지, 영업정지 할 때

제 5 조 (카드 단말기, POS, 기타의 소유권)

1. "을"이 단말기, POS, 기타장비를 할부구매, 임대료 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단말기, POS, 기타장비에 대한 소유권은 "갑"에게 있고 "을"이 할부대금, 임대료, 유지보수료, ASP이용료의 전채대금의 완납 및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을"은 "갑"에게 계약기간 연장을 통보하거나 임대장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2. "을"은 할부금, 임대, 유지보수 계약하여 사용하는 단말기, POS, 기타장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단, "갑"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단말기의 약정 기간은 3년이며, 약정 기간 내 "을"의 요청에 의한 해지 시 "을"은 "갑"에게 잔여 개월 수 X10,000원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3년의 약정 기간 경과 후 단말기의 소유권은 "을"에게 귀속된다.

제 6 조 (물품반출동의서)

1. "을"은 "갑"의 소유권 자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용해야 하며, "갑"의 요구 시 즉시 "갑"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을"은 "갑"에게 "물품반출동의서"를 작성해 주어야 한다.
2. "갑"이나 "을"의 사전 요구에 의하여 물품이 "갑"에게 반환 될 시 현금 환산 방법은 만 5년 감가상각을 적용한 잔존 가치액을 환산하여 정산 후 반환한다.

제 7 조 (준수사항)

1. "을"은 "표2"의 카드단말기, POS, 기타 장비에 등록 된 모든 정보를 이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갑"이 정하지 않은 사람이 "표2"의 카드단말기, POS 기타장비의 수리 또는 개조 등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2. "을"은 "갑"이 제공하는 서비스 시스템에 "갑"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표2"의 단말기, POS, 기타장비 등을 다른 기기로 접속하거나 "갑"과 등록한 "표2"의 단말기, POS, 기타장비의 정보내용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3. "을"은 본인 이외의 제2자에게 본인 명의의 사업자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표2"의 단말기, POS, 기타장비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표2"의 단말기, POS 기타장비를 제 3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 "갑"에게 통지하여 "표2"의 단말기, POS, 기타장비에 등록 된 본인의 정보를 삭제하고 양수인 도는 임차인의 정보를 "표2"의 단말기, POS, 기타장비에 새로이 등록하게 하여야 한다.
4. "을"이 "갑"으로부터 "표2"의 단말기, POS, 기타장비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설치일로부터 만 1년간 무상으로 A/S를 제공한다. 단, "을"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A/S가 발생한 경우는 "을"이 이에 대한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표2"의 단말기, POS, 기타장비를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갑"은 책임지지 않으며,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5. "갑"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에 한하여 "을"인 계약주체의 변경이 가능하며 "표3"의 계약의 이행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면, 인정할 수 있다.
6. "을"이 폐업 시 반드시 "갑"에게 사전에 통보하여 자동이체 출금을 해지요청 하여야 하며, 이를 미 이행하여 기 출금된 "표4"의 자동이체 된 비용의 반환을 "갑"은 비용의 반환을 "갑"은 거부할 수 있다.

제 8 조 (매출전표의 관리)

1. "을"은 신용카드 매출발생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에 규정된 가맹점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을"이 전화로 카드사 전화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카드를 압인하여 전표작성을 해야 하며 해당거래는 단말기의 단말기의 전화승인 수동등록 기능을 통하여 매출전표를 발생한 후 압인 프린트한 매출전표와 함께 은행창구 또는 카드사에 제출해야 한다.
3. "을"은 신용판매대금 자동입금 서비스의 적용을 받은 매출전표를 날짜순으로 분류 보관하고 "우편송부" 계약의 경우 당사에 한 달에 한번 전월 1일 ~말일까지 발생된 전표를 매월 5일전까지 보내주어야 하며 "방문수거" 계약인 경우는 "갑"의 직원이 방문했을 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4. 신용판매대금 자동입금 서비스 적용을 받은 매출전표를 "을"이 카드사에 직접 제출하여 매출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5. "을"이 매출전표관리를 소홀히 하여 분실하거나 "갑"의 매출전표 제출요청에 협조하지 않거나 "갑"의 매출전표 수거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갑"은 "을"의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갑"에 발생한 손해를 "을"은 배상하여야 한다.
6. "갑"이 "을"에게 신용판매매출 자동입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중 발생한 매출전표는 매출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의무보관 하여야 하며 카드사용 전표, 가맹점용 전표를 월별로 분리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 (유지보수)

1. "갑"과 "을"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으로 제품을 사용하고 유지관리 한다.
2. "갑"은 제품의 설치 후 만 1년간 제품의 자체적인 하자에 한해 무상수리 한다. 단, "을"의 부주의로 인한 하자의 발생시 관련 실비를 청구 할 수 있다.
3. 무상보증 기간이 지난 A/S 발생시 "갑"은 관련 실비를 "을"에게 청구한다.

4. POS 장비의 경우 "갑"이 설치한 포스 프로그램 이외의 타 프로그램 및 인터넷 사용 등으로 문제 발생시 복원 및 수리에 따른 모든 실비를 청구한다.
5. "갑"은 카드단말기와 POS, 기타 제품의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 한다.

제 10 조 (애니아이 서비스로 할인)

1. "갑"은 애니아이 서비스 할인액을 변경할 수 있다.
2. 서비스 할인액 변경 시 "갑"은 애니아이 로그인 배너 및 공지 게시판에 공지하며, "을"에게 개별로 통지하거나 동의 받지 않는다.
3. "을"의 건 별 결제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결제건수로 인정한다.
4. 애니아이 서비스로 할인은 당월 결제를 다음달 말에 KIS정보통신으로부터 정산 받아 다음달(2개월 후)에 할인 적용한다.
5. 애니아이 해지 시 마지막 달의 서비스로는 할인 받을 수 없다.

제 11 조 (이용 계약 해지)

1. "을"이 본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를 원하는 날로부터 07 영업일 이전에 "갑"에 서면으로 해지 요청하여야 하며 해지일 까지 발생하는 가맹점의 월 이용료 및 의무사용 약정에 따른 잔여기간 요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2.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을"의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신용카드업자와 "을" 사이에 체결된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이 해지 된 때
② 제8조에 기주하여 전표를 제출하지 아니 한 때
③ "을"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위반행위를 한 때
④ "을"이 "갑"에 지불하여야 하는 이용료 및 임대료 등을 3회 이상 연체한 때
⑤ "을"이 "갑"에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갑"의 서비스 제공을 방해한 때
3. "갑" 또는 "을"이 "표3"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을"의 부도, 파산, 가압류, 가처분 등으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애니아이 이용시에만 카드단말기 사용이 가능하며 애니아이 해지시 카드단말기 서비스도 해지된다

제 12 조 (손해배상)

본 계약체결 이후 공의 또는 중과실로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아래와 같이 부담한다.
1. "을"이 제3조, 제4조, 제10조에 정한 계약 위반 사항은 지원(표2)의 제품공급가에 따른 해지 위약금(총액 36만원 대금 / 총 계약 36 개월 수) X 잔여 개월 수) 과 기 지원된 지원비용 전액을 "갑"에게 즉시 현금 배상해야 한다. ("갑"이 설치한 물품이 무상으로 제공 및 설치 되었다 하더라도 "을"의 귀책사유를 계약 해지 시에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을"이 "갑"과 사전협의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기타 "을"이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본 조에서 정한 해지 위약금 또는 잔여 임대료를 전액 현금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설치 물품의 분실 및 훼손 등으로 해당 물품의 즉시 반환이 불가능 할 때에는 본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는 해당 제품의 가격으로 현금 배상하여야 한다.
3.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배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대비용을 부담한다.

제 13 조 (면책조항)

1. "갑"은 천재지변, 금융기관의 장애, 파업 및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은행, 신용카드 업자나 자료제공자로부터 자료에 오류, 시스템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을(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을(가맹점)"에게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는 "갑"은 책임지지 않는다.
3. 전쟁, 폭동, 내란, 법령제정, 노사분규,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고(정전, 인터넷 전용선 문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갑"이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갑"은 계약 및 개별 계약상의 제반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제 14 조 (해석 및 관할법원)

1.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서 작성 후 기명 후 서명(날인) 하된 완성으로 보고 효력이 즉시 발생된다.
2. 본 계약 상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일반 상, 관례에 따른다.
3. 분쟁이 합의되지 못 할 경우 관할법원은 "갑"의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KIS정보통신

NICE정보통신 주식회사
NICE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Inc.

